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48)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8. 12. 1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98. 12. 14

라. 위원회 상정 : '98. 12. 24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총무국장)

ㅇ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98년 7월 16일 개정공표됨에 따라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율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준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범위와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천재, 지변, 재해시에는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4. 검토요지(전문위원 : 송원수)

ㅇ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ㅇ98년 8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 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

제출년월일 : 1998. 12. 11.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를 1998. 7. 16개정 공포됨에 따라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율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증감 및 현황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8조)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 전체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고용창출효과와 원부자재의 국내조달, 수출비율이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 ~ 100%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25% ~ 100%를 감면함
- 벤처기업과 기술연구단지조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기업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재산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부료를 책정함(안 제21조)
- 천재·지변·재해시는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20년이내 연4%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와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0조, 27조)
-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코자 함(안 제37조)

3. 근거법규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서 92조, 95조, 96조, 100조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준칙안

   ㅇ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 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사항

   ㅇ 입법예고 : '98. 11. 11 ~ '98. 11. 30(공보 및 신문게재)

   ㅇ 입법예고결과 : 다른의견 없음.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및 제10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등)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같은조제2항중제2호 "제37조제1호"를 "제38조의2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중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를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로 한다.

같은조제3항제1호중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때"로 하며, 제2호중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때"로 하고 제3호중 "구청장의"를 "구의"로 하며 "구청장이"를 "구가"로 하고, "연장할 때"를 "연장하는 때"로 하며, 제4호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때"로 한다.

같은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1조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7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3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4조중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면적}}$$

第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조례 第21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第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第34조제2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第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구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

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49조중 "국장등 소속직원의"를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구청장관사
2. 2급관사 : 부구청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적용)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생 략) ②~⑤ (생 략)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부동산시가표준액······ ····················· ····················· ····················· ·········· 2.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및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신설>	**제17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등)**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第18條(영구시설물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19條**<삭 제>
第20條(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개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유·사용되고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第20條(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4. <신 설>	4.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제1호및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제37조제1호를 제38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하는때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3. <삭 제>
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때
2. 국가각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할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3.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신 설>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생략)	**제2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 ························· ·······토지시가표준액····· ······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삭제>
<신 설>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 업인 사업

현 행	개 정 안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7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현 행	개 정 안
第23조(토석채취료 등)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 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第23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략) ④··················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 ·············· ⑤ (현행과 같음)
第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3. (생략) <신 설>	**第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第25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 각호의 1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할 수 있다.	**第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이내 ②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 략)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구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이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현 행	개 정 안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현 행	개 정 안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등 소속직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 주택을 말한다.	**제49조(정의)** · · · · · · · · · · · · · · · ·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
제50조(관사의 구분) 1. 1급관사 : 구청장관사 2. 2급관사 : 부구청장관사 3. 3급관사 : 1급내지 2급이외의 관사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구청장관사 2. 2급관사 : 부구청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 기타관사 등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평가액의 100분의 6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